연수구 공고 제2020 -481 호

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「건축법」제11조(건축허가)제7항 규정에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 건축허가 취소 통보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. 04.

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

1. 제　　목 :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처분근거 : 『건축법』 제11조 제7항
3. 처분내용 : 건축허가 취소
4. 처분대상

허가번호	대지위치	건축주	건축규모 및 용도	건축허가 취소일 (건축허가일)
2017-건축과- 신축허가-85	인천광역시 연수구 **동 5**번지	㈜** 산업개발	용　도 : 업무시설(오피스텔) 연면적 : 375.87㎡(지하1층/지상4층)	2020. 3. 16. (2017. 11. 29.)

5. 공고기간 : 2020. 3. 30. ~ 2020. 4. 14.(15일간)
6. 게시장소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
7. 문의사항 :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축과 건축팀(032-749-8602)
8. 고지사항
   - 『행정심판법』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『행정소송법』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